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22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송재봉 · 강경숙 · 허성무
백승아 · 이재관 · 민병덕
임호선 · 강준현 · 이연희
최혁진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

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71조의3, 제99조의12”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96조의3”을 “제71조의3, 제9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6조의3”을 “제71조의3, 제96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1조의3(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u>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

제71조의3, 제99조의12-----

4. (생략)

③・④ (생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중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illegible]

[illegible][illegible]

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